

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삼구빌딩 7,8층 [http://www.kma.org] / 전화(02)6350-6529 / 전송(02)792-5208
익슬국 국장 최윤배 [6693] 학술교육팀장 손용석 [6518] 담당 김준환 [6529] / E-mail:alexantel@naver.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442-14183호

시행일자 2022. 2. 25.

수 신 319개 연수교육기관장

참 조

제 목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의 건(연수교육 시행규정 개정 및 제2022-1호 연수교육 지침 변경)

1. 귀 교육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제41대 제5차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2022.1.20)

나. 제41대 제39차 상임이사회 의결(2022.2.17)

3. 상기 근거 관련하여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에서 논의를 거쳐 변경된 지침을 제2022-1호로 안내드리오니 동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신 후 교육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 규정과 지침관련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각 교육기관에 있으므로 각 교육기관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내 사항

1)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 연장

가) 배경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 연수교육을 인정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코로나-19 상황

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함.

- 나) 연장기간 : 2022년 6월 30일(이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년 단위 연장 예정)
- 다) 온라인 연수교육 진행방식은 기존과 동일

2) 2022년도 연수교육 관련 규정 주요 변경사항

- 가) 배경 : 연수교육 자(子)기관의 자(子)기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그에 따른 규정 및 양식을 일괄 개정함
- 나) 개정 규정 및 지침
 - 연수교육 시행 규정
 - 연수교육 지침
 - 연수교육 인정심의소위원회 운영지침
 -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관련 방문조사 지침
 -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산하 현장점검팀 운영지침

3) 사이버 연수교육 8평점 인정(※소속 회원 대상 안내 요청 사항)

- 가) 배경 : 1년 5평점까지 인정되던 사이버 연수교육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1년도 8평점까지 인정되었으며, 2022년도 또한 8평점까지 인정 예정
- 나) 적용시기 : 3월 중 시스템 적용 예정(2022년도 회기)
- 다) 기타사항 : 2021년도 회비 납부자 무료, 미납자의 경우 과목당 11만원
※ 일부 교육(의료폐기물, 검체검사질가산, 촉탁의 등)의 경우 회비 미납자 수강 불가

- 첨부 : 1. [제2022-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 1부
2. 2022년도 연수교육 관련 규정 주요 변경사항 1부. 끝.

대한의사협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



목 차

* 2022년도 연수교육 지침 주요 변경사항 [신규 대조표] 2

I. 일반 교육기관 지침

- 신청 4
- 실시관리 12
- 결과보고 14
- 회원편의 15
- 행정사항 16
- 처분조치 16

II. 필수과목 교육기관용 지침

-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개요 18
- 신청 19
- 실시관리 28
- 결과보고 30
- 회원편의 33
- 행정사항 34
- 처분조치 35
- 자주 범하는 오류 36

III. 온라인 연수교육 지침

- 신청, 실시관리, 결과보고 등 37~39
- 의협 연수교육기관 온라인 교육 평점 인정 관련 Q&A 40~43

2022년도 연수교육 관련 규정 주요 변경사항

2022. 3.

대한의사협회

※ 하기의 규정 및 지침 개정에 대한 원문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 정보 센터 → 의사협회 제규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수교육시행 규정

현 행	개 정	비 고
제6조(연수교육기관) ① ~ ③ <생략>	<좌동>	
④ 협회는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연수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심사한다. 단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방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연수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은 제4항의 방문조사에 필요한 소정의 심사비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서면심사나 방문심사에 -----.	
⑥ 조사단 구성·운영, 심사비 기타 제4항의 방문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⑥ 서면심사 및 방문심사 위원 ----- -----서면심사나 방문심사에----- -----.	

연수교육 지침

현 행	개 정	비 고
<p>I. [일반 교육기관용] 연수교육 지침</p> <p>1. 교육 신청 기관</p> <p>○ 지정된 교육기관과 <u>교육기관 산하 정식 등록된 지회(지부) 및 분과학회, 진료과 등만</u> 교육신청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산하단체는 <u>학회 인준 또는 정관, 회칙 등에 명기되어 있거나 홈페이지 등에 등재되어 있는 산하단체 등을</u> 말함.</p> <p>① 시도지사회 : 산하 시군구 의사회, ②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③ 대학병원·수련병원 : 전문 진료과 ④ 학회 : 시도지회 및 분과학회 ⑤ 대한개원의협의회 : 각과 개원의협의회 ⑥ 한국여자의사회 : 시도지부 및 지회</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교육기관의 정식 등록 산하단체를 제외한 기타 단체의 교육을 대리 및 위탁 신청한 교육은 불인정</p> <p>2. 연수교육 신청 일자</p> <p>○ 반드시 연수교육 개최일 20일 이전 신청 - 20일 지연 신청할 경우 사유공문(교육기관장 직인 필) 제출</p> <p>● 지연 교육이 *¹ 자기관(子) 자체교육 이어도 자기관(子) 사유서를 첨부하여 *² 모기관(母) 사유공문으로 제출</p> <p>*¹ 모기관(母) : 대한의사협회 정식 교육기관 *² 자기관(子) : 산하단체 [각 정식 교육기관의 산하로 등록된 지회(지부) 및 분과학회, 진료과]</p>	<p>○ 지정된 교육기관(모기관¹⁾과 지정된 교육기관의 정관 및 회칙에 정식 등록된 산하단체(자기관²⁾만 -----</p> <p>1) 모(母)기관 : 대한의사협회에서 지정을 받은 정식 교육기관 2) 자(子)기관 : 학회 인준 또는 모기관의 정관 및 회칙에 정식 등록된 지회(지부) 및 분과학회, 진료과를 말함.</p> <p>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좌 동></p> <p>⑥ <좌 동> ⑦ 의사회 산하의 학술교육기관</p> <p>○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 -----자(子)기관 ----- ----- 모(母)기관 -----</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 <삭 제></p>	
<p>II. [필수과목 교육기관용] 연수교육 지침</p> <p>1. 필수과목 교육 신청 기관</p> <p>○ 지정된 필수과목 교육기관만 필수과목</p>	<좌 동>	

현 행	개 정	비 고
<p>교육 신청 가능 (하단 ①,②,③,④ 참고, 총99개 기관) <u>(※ 자기관[子]은 해당 안됨 / 자기관= 산하 지회, 지부, 분과학회)</u></p>	<p><u>(※ 자(子)기관은 해당 안됨)</u></p>	
<p>III. 온라인 연수교육 지침 1. 온라인 연수교육 신청 기관 ○ 오프라인 교육과 마찬가지로 <u>지정된 교육기관과 교육기관 산하 정식 등록된 지회(지부) 및 분과학회, 진료과 등만 교육신청 가능 (총 335개 연수 교육기관 외 각 자기관)</u></p>	<p>○ 오프라인 교육과 마찬가지로 <u>지정된 교육기관(모기관)과 지정된 교육기관에 정식 등록된 산하단체(자기관)만 교육 신청 가능</u></p>	

연수교육 인정심의소위원회 운영지침

현 행	개 정	비 고
제3조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위원회는 ‘교육기관·단체 건전성 평가’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평가항목으로 하며, 각 평가항목과 그 심의기준은 [별표 1]로 정한다.	제3조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 ----- ----- ----- [별표 1]-----.	
제4조 (인정 요청) 미지정 교육기관에서 인정심의를 요청 할 때에는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하여 인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1. 인정심의 신청서 [별표 2] 2. 기관소개서 <신 설> 3. 기관 정관(회칙) 4. 임원명단 및 회원구성 현황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5. 최근 3년간 연수교육 개최 실적 (프로그램, 참가자) 6. 개최 예정 연수교육 계획서(예산 안) 포함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제4조 (인정 요청) ① 미지정 교육기관은 연수교육 인정심의소위원회에 인정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심의 요청 시 미지정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차 2. <좌 동> [별표 2] 3. 기관소개서 [별표 3] 4. <좌 동> 5. 임원명단(조직위원회) 6. 개최 예정 연수교육 프로그램 7. 개최 예정 연수교육의 예산서 및 최근 3년간 연수교육 결산서 [별표 4, 5] 8. <좌 동> 9. 개최 예정 연수교육 계획서 10. 회원 구성 현황(연번, 이름, 면허번호, 소속)	
제7조 (회의) ① 인정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 20일 이전까지 접수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 매분기 마지막 월까지 요청된 인정심의 안건을 종합하여 익월에 개최하는 것을 -----. ② <좌 동>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관련 방문조사 지침

현 행	개 정	비고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u>관련 방문조사</u> 지침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u>관련 심사</u>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의사협회(이하, ‘협회’) 연수교육 시행규정 제6조 관련, 연수교육 기관 요건 구비 여부 판단을 위한 <u>방문조사</u> 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심사</u> 에 ----- -----.	
제2조(<u>방문조사단</u> 구성) ①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중 2명 이상으로 방문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조(<u>심사위원</u> 의 구성) ①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u>서면심사와 방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u> ②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중 2명 이상으로 <u>서면심사 위원 및 방문심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u>	
② 방문조사단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u>서면심사 위원과 방문심사단장 및 방문심사위원</u> 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3조(<u>방문조사단</u> 활동) ① 방문조사단은 연수교육 시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u>조사</u> 대상 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u>사전 방문조사</u>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u>방문조사</u> 기간은 <u>방문조사단</u> 이 조정할 수 있다. ③ 방문조사단은 사전에 <u>방문조사</u> 일자 및 절차 등을 <u>조사 대상 기관</u> 에 알려주어야 하고, <u>조사 대상 기관</u> 은 <u>방문조사단</u> 에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문조사단은 <u>방문조사</u> 종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방문조사 결과서를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u>방문조사단장</u> 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u>방문조사</u>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조(<u>방문심사단</u> 활동) ① <u>방문심사단</u> ----- ----- <u>심사</u> ----- ----- <u>사전 방문심사</u> ----- -----. ② <u>방문심사</u> ---- <u>방문심사단</u> ----- -----. ③ <u>방문심사단</u> 은 ----- <u>방문심사</u> ---- ----- <u>심사 대상 기관</u> ---- ----- <u>심사 대상</u> ---- <u>방문심사단</u> ---- -----. ④ <u>방문심사단</u> 은 <u>방문심사</u> ----- ----- <u>심사</u> ----- -----. ⑤ ----- <u>방문심사단장</u> - ----- <u>방문심사</u> ---- -----.	
제4조 (<u>방문조사단</u> 의 의무) ① 방문조	제4조 (<u>서면심사</u> 위원 및 <u>방문심사단</u> 의	

현행	개정	비고
<p>사단원은 방문조사 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방문조사단원은 방문조사 과정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p> <p>③ 방문조사단원은 조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부정합 청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p> <p>④ 방문조사단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이 근무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있는 기관 기타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기관의 조사 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⑤ 방문조사단원은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조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조사 활동과 관련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⑥ 방문조사단원은 별지 서식 제3호에 따른 서약서에 서명하여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u>의무</u>) ① <u>서면심사 위원 및 방문심사단원은 서면심사 및 방문심사 과정 중</u> -----.</p> <p>② <u>서면심사 위원 및 방문심사단원은 서면심사 및 방문심사 과정</u> -----.</p> <p>③ <u>서면심사 위원 및 방문심사 단원은 심사</u>-----.</p> <p>④ <u>서면심사 위원 및 방문심사 단원은</u> -----<u>심사를</u> -----<u>심사</u>-----.</p> <p>⑤ <u>서면심사 위원 및 방문심사 단위</u>-----<u>심사 대상</u> -----<u>심사 활동</u>-----.</p> <p>⑥ <u>서면심사 및 방문심사 단원은</u> -----.</p>	
<p>제5조 (비용) ① 대상 기관은 협회 연수교육 시행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서류 접수와 동시에 방문조사단의 조사 활동에 관한 제반 비용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정한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p>	<p>제5조 (비용) ① ----- -----<u>서면심사 및 방문심사단의</u> -----<u>심사 활동</u>-----.</p> <p>②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6조 (심사결과 의 통보) 협회는 심사 대상 기관에 심사결과를 ‘지정’, ‘지정 불가’ 로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6조 (여비 등) ①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문조사단에 <u>방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의 비용의 지급은 관련 규정에 따르고 수당은 회장이 정한다.</p>	<p><u>제7조 (여비 등) ①</u> ----- -----<u>서면심사 위원 및 방문심사단에</u> -----<u>에게 심사</u> -----.</p> <p>②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15. 6. 10)</u></p> <p>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상임이사회 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2022. 2. 17)</u></p> <p>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상임이사회 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산하 현장점검팀 운영지침

현행	개정	비고
<p>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현장점검”이라 함은 “현장점검팀” 위원이 연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시행 전반에 관한 적정성 평가와 조사, 지도감독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p> <p>2. “현장점검팀”이라 함은 “<u>현장점검팀</u>”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u>협회 산하 시도의사회에 설치한 “현장점검팀”</u>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좌 동></p> <p>2. -----<u>현장점검팀</u>의-----<u>제5조에 따라 협회에 설치한 조직을</u>-----.</p>	
<p>제5조(구성) ① “현장점검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회장이 위촉한다.</p> <p>② “위원”이라 함은 연수교육에 대한 현장 평가 등의 “현장점검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u>시도의사회로부터 추천되어</u> 협회 회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p> <p>③ “현장점검팀”은 전전년도 연수교육시행 현황을 근거로 <u>백분율로 산정하여 각 시도별 위원수를 배분하며, 100명 내외로 구성한다.</u></p>	<p>제5조(구성) ① <좌 동></p> <p>② -----<u>시도의사회나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장이 추천하고</u>-----.</p> <p>③ -----<u>각 시도별 위원수를 배분할 수 있으며,</u>-----.</p>	
	<p><u>부 칙(2022. 2. 17)</u></p> <p>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상임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붙임 # 1】

[별표 1]

○ 인정심의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연수교육 프로그램 평가

현 행			개 정	
No.	항목	점검내용	항목	점검내용
7	<신 설>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예·결산 내역이 적정합니까?	참석 회원 대비 예산 및 지출 규모의 합리적 정도 ex) 1인당 1백만원

【붙임 # 4】

[별표 4]

예산 내역서				
수 입				
세부항목	수입	단가	수량	비고
등록비				
부스비				
광고비				
지원금				
자체 예산				
수입 합계 (A)				
지 출				
세부항목	지출	단가	수량	비고
대관료				
행사 업체 운영비				
시스템 구축비				
자료 제작비				
연자, 좌장비				
식음료비				
교통비				
홍보비				
기자재 대여비				
기타				
예비비				
지출 합계 (B)				
수익 금액 (A-B)				

【붙임 # 5】

[별표 5]

결산 내역서

학회명	설립연도
담당자	회원수
연락처	이메일
FAX	작성일자

1. 사업내용	
대회명	
개최 기간	
개최 장소	
참석 인원	

수 입				
세부항목	수입	단가	수량	비고
등록비				
부스비				
광고비				
지원금				
자체 예산				
수입 합계(A)				

지 출				
세부항목	지출	단가	수량	비고
대관료				
행사 업체 운영비				
시스템 구축비				
자료 제작비				
연자, 좌장비				
식음료비				
교통비				
홍보비				
기자재 대여비				
기타				
예비비				
지출 합계(B)				
수익 금액(A-B)				

【붙임 # 6】

[별지서식 제1호]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관련 방문 <u>심사</u> 계획서											
1. 일 반 현 황											
① 방문 기관명				⑤ 기관 책임자							
② 방문 <u>심사</u> 단원				⑥ 기관 담당자 연락처				☎			
③ 방문 <u>심사</u> 일시								핸드폰			
④ 방문지역											
⑦ 사전 방문 <u>심사</u> 현황	관리 책임자	전담 관리 인력	연수교육 시행 계획	일반현황							기타
				전담기구 (위원회)	강사진	체규정	편성예산	교육장소	기자재	주무부서	
첨부: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류 1부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관련 <u>심사</u> 지침」 제3조제1항 따라 방문 <u>심사</u>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방문 <u>심사</u> 단장 :								(서명 또는 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 7]

[별지서식 제2호]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관련 심사 결과서

기관명 :

구분	확인 사항	심사 결과	비고
1. 단체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단체 <input type="checkbox"/> 영리 단체	<input type="checkbox"/> 적절 <input type="checkbox"/> 부적절	
2. 정기 또는 비정기적 의학 학술활동 시행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절 <input type="checkbox"/> 부적절	
3. 연수교육 관련 규정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절 <input type="checkbox"/> 부적절	
4. 최근 3년간 주요 연수교육 실적 (정기적 연수교육 실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절 <input type="checkbox"/> 부적절	
5. 연수교육 시행 계획 여부 (교육 목표, 강사 구성 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절 <input type="checkbox"/> 부적절	
6. 운영 회칙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절 <input type="checkbox"/> 부적절	
7. 운영 조직 (총회, 이사회, 임원, 감사, 사무처 등)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절 <input type="checkbox"/> 부적절	
8. 운영회비의 정기적 수납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절 <input type="checkbox"/> 부적절	
9. 재무·회계 규정 (회원 개인 및 회원 소속 의료기관 등과 별개의 독립적 회계 규정 포함)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절 <input type="checkbox"/> 부적절	
10. 연수교육 관련 위원회의 구성 (연혁, 기구표, 위원회 명단, 활동내역)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절 <input type="checkbox"/> 부적절	
11. 연수교육 전담 책임자 배치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절 <input type="checkbox"/> 부적절	
12. 연수교육 전담부서 운영 (직제표, 인력 명단 등)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절 <input type="checkbox"/> 부적절	
13. 연수교육 예산 편성(예산서 등)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input type="checkbox"/> 적절 <input type="checkbox"/> 부적절	
14. 연수교육 장소 및 기자재 보유 능력		<input type="checkbox"/> 적절 <input type="checkbox"/> 부적절	
심사자 최종 의견*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지정 <input type="checkbox"/> 미지정		
	의견 사유 :		

※ 심사 결과 1호부터 5호까지 5개 항목이 적합하고, 6호부터 14호까지 5개 항목 이상 적합한 경우 지정으로, 5개 항목 미만인 경우 미지정으로 판단함.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관련 심사 지침」 제3조제4항 따라 심사 결과서 제출합니다.

20 . . .

심사자(방문심사단장) : (서명 또는 날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 약 서

본인은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관련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대한의사협회의 관련 심사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더불어, 신규 연수교육기관 지정 대상기관 서면심사 및 방문심사와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승인 없이 어떤 형태로든 유출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은 본 서약에 대한 불이행으로 초래되거나 초래될 수 있는 협회, 대상기관 기타 제3자의 모든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날 짜

성 명

서 명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귀중